

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2021년 2월부터 옆 건물 철거와 신축 공사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으로 독서실과 같이 소음관리를 해야 하는 스터디카페 공간에 큰 피해를 주었으며, 분진으로 창문 환기를 할 수 없으며 이용자들의 소음/진동 컴플레인으로 정신적 피로도가 커지고 이용회원들의 지속적인 이탈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로 인하여 공사 시작부터 하락된 매출이 2021년 11월에는 전해 대비 10분의 1로 줄어들 정도로 피해가 막심하였습니다. 스터디카페의 스터디존에 비치된 좌석인 49개 좌석이 꽉 차던 저희 카페는 현재 매일 2~3명의 인원만이 겨우 이용하고 있어 손실이 엄청나기에 영업손실 전체보상은 접어두더라도 공사마무리까지 사업장 유지라도 할 수 있도록 공사로 인해 피해 입은 달만의(2~3월, 6~12월 총 9개월) 월세 금액만을 (217만*9개월, 19,530,000)제시 하였습니다.
-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에는 회의를 통해 알려주겠다고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 12월경 공사 막바지가 되니 애초에 약속했던 보상조차 무시하고 터무니없는 보상액(한 달치 월세 보상 대략 200만원)을 주겠다고 내용만 전달한 뒤 이제는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나. 피신청인 주장

- 당사 입장에서는 현장 관리는 대한민국 건설업체들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업무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 현장 운영은 7시 30분경 시작하여 오후 4시면 대부분 현장 마무리 하였습니다.
- 거두절미하고 당사 생각에는 코로나 때문에 매출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옆 현장이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니 도리상 200만원 배상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3.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현황

- 분쟁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주변에 상업시설이 많고 ○○로에 접해 있어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위치하여 배경소음이 높은 환경이다.

나. 신청인 영업장 현황

- 위 치 : ○○구 ○○동, 2층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성명	상호	주소	영업개시일
○○○	○○○스터디카페	○○구 ○○동 2층	2020.01

다. 피신청인 공사 현황

- 위 치 : ○○구 ○○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연 면 적 : 1,278.48 m^2
- 규 모 : 지하1층, 지상7층
- 주 용 도 : 근린생활시설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 공사기간 : 2021.6.8.~2022.1.7.(7개월간)

※ 철거기간은 21.2.18.~3.18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 점검 결과

- 시공사를 상대로 소음 피해민원이 관할구청(환경과)에 5차례 제기되어 소음측정결과 1회 기준초과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연번	측정장소	측정일	대상소음도	조치사항
1	○○동	2021-12-13	75dB(A)	과태료 및 행정처분

3.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진동·먼지에 의한 정신적 피해 평가

- 신청인 사업장에서의 공사장소음 분석결과, 주거지역 수인한도(65dB(A))를 최고 8dB(A) 초과하였지만 신청인 사업장이 상업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음에 의한 피해는 영업피해로 귀결될 것이므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동 피해 평가

- 피신청인 공사현장에서는 발파 작업이 없었고 투입장비의 진동레벨이 가장 높은 오거의 5m 이격된 지점에서 최고 64.4dB(V)이므로 수인한도[65dB(V)]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먼지 피해 평가

- 피신청인이 현장살수, 세륜기 설치·운영, 방진막 설치 등 통상적인 방지대책을 실시하였고, 신청인 영업장 특성상 방음을 위해 기본적으로 창문 등을 폐쇄한 상태에서 영업한다는 점에서 공사장의 비산먼지에 의한 피해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았다.

라. 영업손실 피해 평가

- 현지조사와 기 제출되어진 관련 자료 및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인접 건물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어 신청인이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 평가하였다.

- 사업의 종류 : 서비스, 스터디카페
- 운영현황 : 독서실 49석, 공부방 4석.
- 영업실적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2020년 월 평균매출액 : 102,059,500원 / 12월 = 8,505,000원/월

- 피해기간 매출액(2021.06월~12월) : 18,852,800원(A)

- 피해기간 적정매출액(2021.06월~12월) : 8,505,000원/월 * 7월
= 59,535,000원(B)

- 매출감소액 (B-A) : 59,535,000원 - 18,852,800원 = 40,682,200원

○ 영업이익률 : 40% (단순경비율 : 75.2)

- 독서실에 커피 제공으로 일반적인 수익률을 적용하되 소유자가 직영하고 있어
소유자의 인건비 포함한 수익률

○ 영업피해율 : 20%

- 환경분쟁업무편람에서는 소음, 진동 등의 영업피해율은 독서실과 같이 정온을
요하는 시설은 초과소음도가 10dB 미만인 경우는 40~60%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 본 사업장의 매출감소 원인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환경적인 요인과 코로나
19의 대유행으로 인한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 정책(집합금지, 영업
시간 단축 등)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 정부의 강력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이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영업
피해율을 40%로 하였음.

○ 영업피해액

= 매출감소액 × 영업이익률 × 영업피해율

40,682,200원 × 40% × 40% = 6,509,150원

4. 판단

○ 신청인 사업장의 매출하락이 피신청인 공사의 소음으로 인해 일부 영업
손실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피신청인 ○○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의거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영업피해를 받은 ○○○에게 배상한다.

다. 배상금액

- 소음으로 인한 영업손실 피해 배상액 6,509,150원, 재정신청 수수료 19,520원을 추가하여 합계 6,528,670원이다.

- 공사장 소음에 따른 영업손실 피해 : 6,509,150원

- 재정신청 수수료 : 19,520원

▶ $6,509,150\text{원} \times 0.3\%$

= 19,520원(10자리 내림)

6. 결론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서류, 현지조사결과, 전문가 의견, 당사자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